

국내여행자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자]

이 콘텐츠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여행준비(교통수단, 숙박, 여행사계약, 보험 등)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국내여행자	1
1. 여행 준비하기	4
1.1. 여행계획을 세워요.	4
1.1.1. 여행방법 결정 및 정보 찾기	4
1.1.2. 여행 지원사업	6
1.2. 여행사를 이용해요.	8
1.2.1. 여행계약 체결하기	8
1.2.2.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11
1.3.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요.	15
1.3.1.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15
2. 여행하기	17
2.1. 어떻게 이동할까요?	17
2.1.1. 버스 이용하기	17
2.1.2. 기차 이용하기	19
2.1.3. 비행기 이용하기	23
2.1.4. 선박 이용하기	28
2.1.5. 렌터카 이용하기	30
2.2. 어디서 잘까요?	33
2.2.1. 숙박시설 이용하기	33
2.3. 무엇을 할까요?	36
2.3.1. 관광지 등 방문하기	36
2.3.2. 레포츠 즐기기	39
2.3.3. 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45
3. 여행 마무리	48
3.1. 여행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48
3.1.1. 여행객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48
3.1.2. 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51

1. 여행 준비하기

1.1. 여행계획을 세워요.

1.1.1. 여행방법 결정 및 정보 찾기

자신에게 맞는 여행방법에 따라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 준비

국내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는 여행일정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교통수단, 숙박시설, 음식, 여행자보험 등)을 스스로 계획할 것인지 여행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행사 이용 여부(자유여행, 패키지 투어여행 등)

자유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는 여행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정보 등을 직접 찾아서 결정하고 예약합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투어상품을 이용하여 여행하거나, 여행 중 필요한 일부 사항(교통, 숙박, 관광지 입장권, 음식점 등)을 여행사를 통해 예약합니다.

숙박 여부(당일여행, 숙박여행 등)

숙박을 하지 않고 하루 동안 여행지를 방문하고 귀가하는 당일여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등 여행지에서 숙박을 하고 주변을 여행하거나 여행지를 이동하며 여행하는 방법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여행방법

(정보 1) 걷기 여행 또는 자전거 여행: 대한민국 곳곳에 조성된 “걷는길” 또는 “자전거길” 코스 중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일정을 짜고 주변 여행지를 관광하고 체험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홈페이지(<https://www.durunubi.kr/>)

전국의 걷기길, 걷기코스 또는 자전거길, 자전거코스를 찾아볼 수 있고, 교통·숙박·음식·행사·문화유적지 등 주변 여행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운전관련 안전규칙, 벌금규정,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2) 캠핑 여행: 캠핑장 또는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캠핑 홈페이지(<https://www.gocamping.or.kr/>)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약 3천 여개의 캠핑장 정보를 지역별 또는 테마별(해변, 산, 숲, 계곡, 도심 등)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캠핑을 위한 준비, 주의사항, 캠핑 관련 분쟁 해결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캠핑\(야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3) 농촌 여행 또는 바다 여행: 전국의 농촌이나 어촌 또는 바다를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하거나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 (<https://www.welchon.com/>)

농촌체험휴양마을, 민박, 맛집 등 농촌여행에 대한 정보와 계절·테마별 농촌여행 코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바다여행** 홈페이지 (<https://www.seantour.com/>)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 정보 또는 어촌 관련 테마여행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여행정보를 찾아보세요.

여행정보 검색

국내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는 다양한 여행정보를 검색하여 일정 및 목적 등에 맞는 여행지 또는 여행방법 등을 결정하여 여행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

인기 여행지 정보와 지역별·계절별·테마별 추천 여행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여행코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행코스를 짜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 (<https://access.visitkorea.or.kr/>)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 모든 여행자가 이동의 불편이나 활동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추천코스, 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등)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 (<https://www.riverguide.go.kr/>)

대한민국 강 또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캠핑장 및 체육시설, 즐길거리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갑자기 아픈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여행 중 낯선 곳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주위의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워 난감한 적이 있으시죠? 특히, 휴일에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

: 전국의 응급실, 병원, 약국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방법, 민간구급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홈페이지 (<https://www.pharm114.or.kr/>)

: 휴일에도 운영 중인 약국, 연중무휴약국, 심야약국을 검색할 수 있고, 의약품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2. 여행 지원사업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여행이용권”이란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2).

여행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6항).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란?]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행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여행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주민센터

인터넷: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전화: ☎ 1544-3412

여행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원이며, 생애주기별로 1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추가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용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 -사업소개-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참조].

(예)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의료법인 등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 신청-참여 대상 및 기간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근로자분담금이 입금되면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 신청-참여 신청 절차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홈페이지 (<https://vacation.benepia.co.kr/>)에서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적립금 사용 안내-휴가샵 소개 참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여행사를 이용해요.

1.2.1. 여행계약 체결하기

여행사 확인하기

“여행업”이란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여행업 등록 및 보험가입 등 확인하기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함)·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본문).

여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여행사”라 함)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따라서 여행자는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A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갑자기 가이드를 통해 A여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시 피해보상 방법](#) 참조>

※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를 통해 여행사를 검색하거나 여행사 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는 소비자24 홈페이지(<https://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의 체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2항).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3항).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7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5조).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 (변경된 경우도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7조).

여행요금의 내역 및 지급

여행요금의 내역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1항 본문).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그 밖의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요금 지급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3항).

여행조건의 변경 및 여행요금 정산 등

여행조건의 변경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여행요금 정산 등

여행사는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6항 본문).

※ 안전여행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안전여행상품은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상품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한 여행상품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별도의 선정절차(안전여행상품 선정 공고 -> 평가기관 선정 -> 심사 및 평가 -> 안전여행상품 선정)를 거쳐 매년 안전여행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여행업협회 여행교육원 홈페이지(www.traveledu.or.kr)-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한 안전여행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교육원 홈페이지 (www.traveledu.or.kr) -여행업 법률&규정-안전여행상품-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의 책임

하자의 시정 및 대금의 감액 등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단서).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항).

위의 청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3항).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본문).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단서).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6항).

여행계약의 해제

※ 여행사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구분	해제 사유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1항).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과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배상기준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여행계약의 해지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2항).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지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본문).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단서).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3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본문).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3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단서).

※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와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요.

1.3.1.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아래의 여행자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보험과 보상범위

여행자보험의 개념

여행자보험은 신체상해 손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및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상범위

국내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됩니다.

휴대품 손해는 일반적으로 휴대품 1품목(1개, 1조 1쌍)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가입방법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여행기간, 보험회사,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000원 내외(3일 기준)가 일반적입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보험약관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상병, 여행 중 위험한 활동(예: 전문등반, 위험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및 기타 위험한 활동),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청구

보험 해지

여행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방법,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청구,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행하기

2.1. 어떻게 이동할까요?

2.1.1. 버스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고속버스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버스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시외버스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버스 승차권 구입하기

승차권 예매

버스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터미널의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버스 승차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 (<http://www.kobus.co.kr/>) / ☎ 1644-9030

시외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 (<https://txbus.t-money.co.kr/>) / ☎ 1644-3070

부가 운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 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제17조제2항].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그 밖에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버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여객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의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제1항 및 코버스 홈페이지 (<https://www.kobus.co.kr/>) 참조].

구분		취소수수료	
		월~목	금~일 / 공휴일
출발 전	2일 전	없음	없음
	1일 전~3시간 이전	운임액의 5%	운임액의 7.5%
	3시간 미만~출발 전	운임액의 10%	운임액의 15%
출발 후	출발 후~도착예정시간 이전	25. 5. 1.부터 26. 4. 30.까지: 운임액의 50% 26. 5. 1.부터 27. 4. 30.까지: 운임액의 60% 27. 5. 1.부터: 운임액의 70%	
	도착예정시간 초과	운임액의 100%	

※ 지정차 출발 당일에 승차권을 발행한 경우 지정차 출발 이전이라면 발행시점 기준 1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제1항 참조) .

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버스 운행이 취소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제4항) .

유형		환급 기준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된 경우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운송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해 수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여객이 지정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
운송 도중 운송이 지연된 경우	예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액의 20%를 환급
	예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운임액의 40%를 환급

버스 이용 시 준수사항

안전띠 착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

위해행위 금지

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1호) .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고속버스 안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2항 및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6조).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다른 여객에 대해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3조 본문).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시체

동물 (다만,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기차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열차 승차권 구입하기

승차권 예매

열차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역의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www.letskorail.com/>) / ☎ 1544-7788

SR: 홈페이지 (<https://etk.srail.kr/>) / ☎ 1800-1472

부가 운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여객운송약관」 제12조제1항).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1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30배

열차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항 및 별표).

유형			위약금
출발 전	월요일~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5%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30% (월~목은 15%)
	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70%
	도착역 도착시각 경과 후		100%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호·제4항, 제14조제2항,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

지연시간	고속열차	일반 열차
20분 이상 ~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50%	50%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다만,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 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항).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1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2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영수금액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경우에는 같은 할인율로 계산한 운임·요금 환불)

열차 이용 시 준수사항

휴대품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철도안전법」 제42조)
-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철도안전법」 제43조)

동물(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여객열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2항, 제79조제2항제7호의2·제3항제18호·제4항제12호·제5항, 제82조제2항제8호·제4항제2호·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0조제1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열차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금지행위의 제지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

2.1.3. 비행기 이용하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항공권구입하기

항공권 예매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창구, 다음의 각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항공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www.koreanair.com/>) / ☎ 1588-2001

아시아나: 홈페이지 (<https://flyasiana.com/>) / ☎ 1588-8000, 02-2669-8000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s://www.airbusan.com/>) / ☎ 1666-3060, 1666-6265 (단체문의)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s://www.eastarjet.com/>)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s://www.jejuair.net/>) / ☎ 1599-1500

진에어: 홈페이지 (<https://www.jinair.com/>) / ☎ 1600-6200, 02-6099-1200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 ☎ 1688 8686

항공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여객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

유형	배상기준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불
항공권 일부 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불

항공 운송이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항공 운송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

유형	배상기준
• 운송 불이행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이 제공 (12시간 이내) 된 경우 (타 항공사 포함)	
①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②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비행기 이용 시 준수사항

액체류 및 위해물품 등 휴대 금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겔(gel)류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 .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 함],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른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 .

휴대 금지물품 (위탁 가능)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총기류 및 구성부품 - 전자총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공구류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인화성 물질 - 액체·분무·겔류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 (https://www.avsec365.or.kr/) -금지물품-객실내반입 금지물품>	- 뇌관 - 기폭장치류 - 군사 폭발 용품 - 폭죽, 조명탄 -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토치, 토치라이터 - 인화성가스 및 액체 -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 (https://www.avsec365.or.kr/) -금지물품-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또는 위해물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또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다음의 신분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 본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별표 5) .

다음의 증명서나 서류

-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 √ 「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 √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 √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등)

승객의 협조의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1.을 위반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1호).

2. 흡연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3.을 위반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2호).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4.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4.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2호 및 제8항제2호).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3호 및 제8항제3호).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위 6.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9조제2항제1호).

7.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 함)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위 7.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9조제1항).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6조).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해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7조).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4항) .

※ 이를 위반하여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49조제2항제2호) .

2.1.4. 선박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해운조합의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여객선 이용 및 승선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선박(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승선권 구입하기

승선권 예매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여객터미널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승선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예매 홈페이지 (<http://island.haewoon.co.kr/>) / ☎ 02-6096-2266

승선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여행객이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약관」 (한국해운조합) 제20조제1항] .

유형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1일 전까지	전액 환불
출항 전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기상상황 등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약관」 제20조제1항) .

유형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전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선박(국내여객) 부분 및 「운송약관」 제20조제1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항 전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배상
출항 후	다른 선박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환불없음 (지연료 지불 별도)
	출발항까지 환송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배상
	중도에서 하선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배상

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운항시간 1시간 이하인 경우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 제20조제1항).

유형	환불기준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의 10% 배상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운임의 20% 배상

선박 이용 시 준수사항

여객의 의무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1항).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3항).

※ 여객선이용시 신분확인 절차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급하거나 승선할 때에는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2항).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12. 2.) “연안여객선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참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의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해운법」 제21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15조의8) .

1.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 위 1.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운법」 제57조제3호의2) .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5.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 위 2.부터 7.까지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운법」 제59조제3항제1호의4) .

2.1.5. 렌터카 이용하기

자동차 빌리기

자동차 대여 예약

자동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려는 여행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대여약관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해당 업체의 대여약관을 통해 요금 또는 환급, 자동차 취급, 대여책임,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렌터카 회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아래와 같이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차량종류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승합자동차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이륜자동차	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
	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동차대여계약의 취소·환불·배상 등

※ 자동차 대여방법 및 대여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대여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 등의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를 대여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유형		환급기준
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 대여를 예약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유형	배상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여행객 또는 대여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유형	배상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자동차 대여업체를 이용할 때,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 ①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②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 ③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립니다.
 - ①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②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③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①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②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참조>

2.2. 어디서 잘까요?

2.2.1. 숙박시설 이용하기

숙소 예약하기

숙소 예약

숙박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선호도 또는 여행목적, 여행일정 등에 따라 호텔, 민박, 호스텔, 펜션 등 숙박시설의 종류를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베니키아 이용하기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비즈니스호텔급 체인브랜드입니다.

전국 베니키아 가맹 호텔은 베니키아 호텔 홈페이지 (<https://www.benik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박집 이용하기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농어촌민박업, 휴양펜션업 등의 민박업을 숙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이프스테이 홈페이지 (<https://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민박숙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취소·환불·배상 등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객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유형		환급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유형	배상기준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유형	배상기준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2.3. 무엇을 할까요?

2.3.1. 관광지 등 방문하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둘러보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관광지 및 관광당지에 입장하는 여행자는 입장료를,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나 이용료를 낼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현황

2023년 6월 기준 관광지는 224개, 관광단지는 49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광지 및 관광당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 또는 국가관광자원개발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tds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 둘러보기

자연공원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4 및 제4조 참조).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함)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군립공원: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자연공원 지정 현황

2022년 5월 30일 기준 국립공원은 17개, 국가지질공원은 13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립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https://www.koreageopark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항).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땃·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등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 국립공원 이용하기

국립공원에서는 야영장, 대피소,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의 시설 및 탐방로, 탐방프로그램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https://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산행가이드 이용하기

국립공원에서는 산행 중 추락, 탈진 등 사고 위험성 높은 탐방로 구간 탐방 시 국립공원 안전산행가이드와 동행하는 안전서비스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산행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안전가이드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nps.or.kr/safer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 관광 정보

전국 시·도별 주요 지역축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일정 및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버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주변을 정차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투어코스
서울시티투어 (https://www.seoulcitybus.com/)	도심고궁코스, 파노라마코스, 강남어라운드코스, 야경코스 등
부산시티투어 (http://www.citytourbusan.com/)	레드라인, 그린라인, 부산역출발야경투어 등
대구시티투어 (https://www.daegucitytour.com/)	팔공산코스, 비슬산코스, 낙동강코스, 수성가창코스 등
인천시티투어 (https://citytour.ito.or.kr/)	바다노선, 인천 레트로노선, 소래포구투어, 강화역사투어 등
경주시티투어 (https://cmtour.co.kr/)	동해안투어, 세계문화유산투어, 신라역사투어, 경주야경투어 등

※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레포츠 즐기기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등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2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본문).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4호).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5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제1항).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7호).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2호).

※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 등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 이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4).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3호).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등을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중레저활동 주의사항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다음의 행위 제한(「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 이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 이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

누구든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

자연휴양림 등 이용하기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 참조) .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치유의 숲”이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

※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저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및 제9호) .

“산림레포츠”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산림레포츠의 종류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등이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및 별표 3의3 참조).

※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시설 정보와 이용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숲길 이용하기

“숲길”이란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숲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다음의 길
 - ①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②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숲길 예약탐방제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숲길 정보 및 예약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4호).

※ 산불 예방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인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9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위 1.과 3.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4항).

※ 위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4항제2호).

2.3.3. 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따라 출항하는 여행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포함)는 지정면세점을 이용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참조).

면세물품 구입 방법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 및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구매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

다음의 주류와 담배는 위 구매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며, 19세 이상의 여행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6조).

구분	수량		배상기준	
주류	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함	
담배	궐련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6항) .

면세물품 인도

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

인도확인 서명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제1호 참조] .

면세물품 교환·환불

교환·환불신청서 제출

면세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교환·환불 절차

교환·환불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교환하는 물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

면세점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

면세점 이용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부정유통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가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면세물품 구입, 인도, 교환·환불 및 A/S, 통관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마무리

3.1. 여행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3.1.1. 여행객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경범죄에 따른 처벌

경범죄 처벌

여행 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본문).

경범죄 종류 중 여행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범칙행위		범칙금액
쓰레기 등 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①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②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경우	5만원
	② 담배꽂초, 껌, 휴지를 아무 곳이나 버린 경우	3만원
노상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①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②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자연훼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5만원
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5만원

음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20호)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위험한 불씨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22호)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8만원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23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쓴 경우	3만원
거짓 인적사항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30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락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8만원
행렬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36호)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만원
무단 출입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37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2만원
총포 등 조작장난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38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8만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1항제39호)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5만원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2항제3호)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6만원
암표매매 (「경범죄 처벌법」 제3 조제2항제4호)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본문).

법원을 통한 해결

형사사건으로의 처리

여행 중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 홈페이지(<https://www.spo.go.kr/>)-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 안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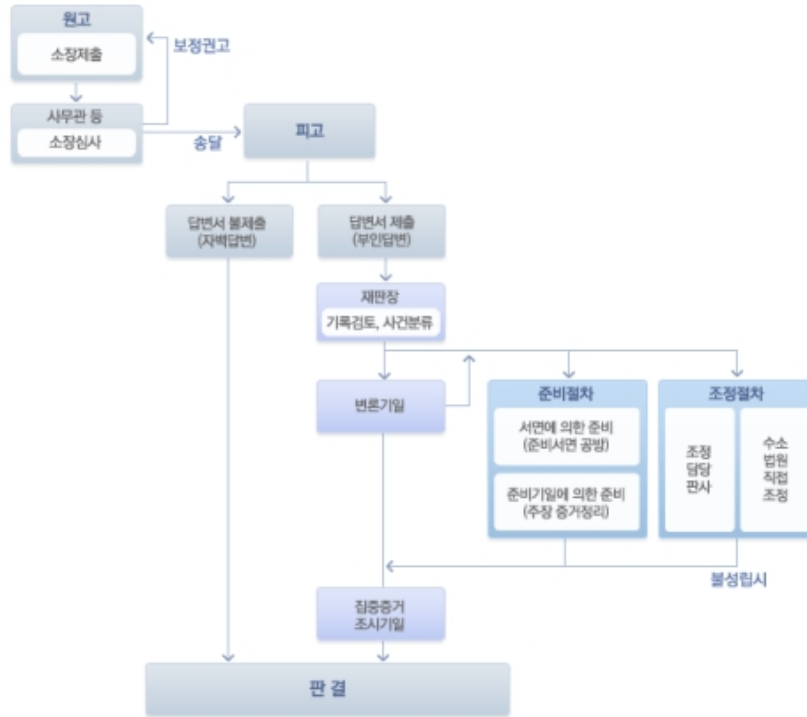
※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또는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여행 중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민사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소송의 진행-소송 절차 안내 참조].



※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kto.visitkorea.or.kr/>) -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

관광불편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



신고방법

관광불편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

인터넷: [관광불편신고센터](#)

이메일: tourcom@knto.or.kr

전화: ☎ 1330

팩스: ☎ (033) 738-3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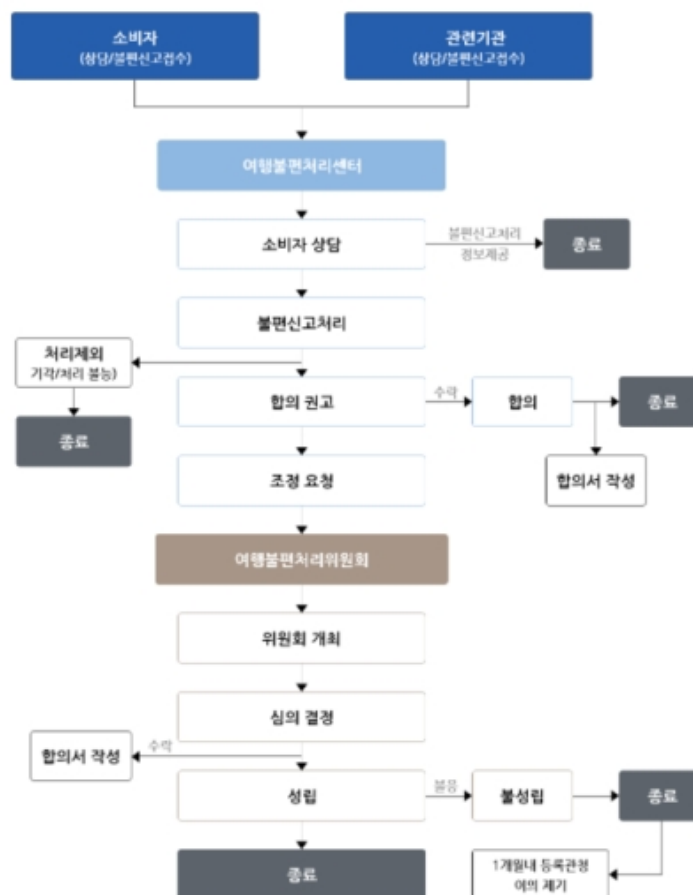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여행불편신고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tourinfo.or.kr/>\) -여행불편처리센터](#) 참조] .

여행불편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신고처리절차](#) 참조) .



신고방법

여행계약 불이행 등 각종 불편신고 접수는 다음의 방법으로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행불편처리센터-불편신고접수](#)

전화: ☎ 1588-869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72

인터넷: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http://www.ccn.go.kr/>)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피해구제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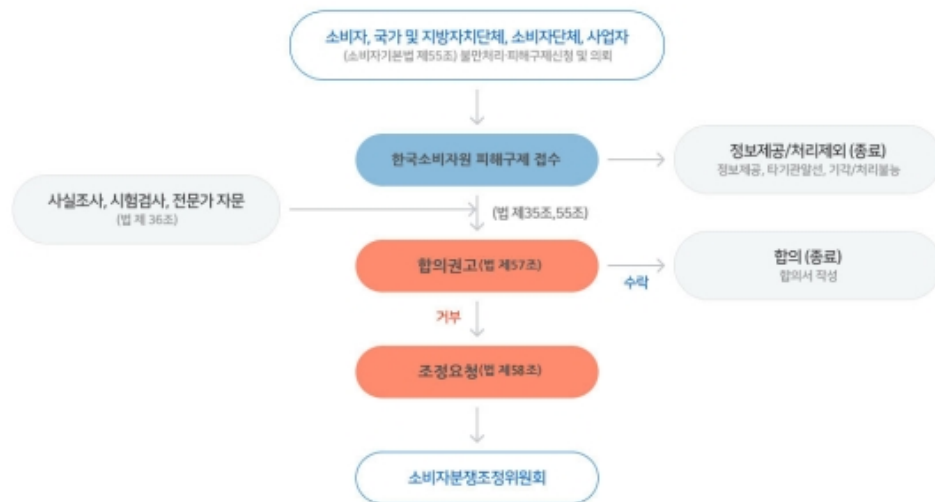
우편: (우편번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피해구제-절차안내](#) 참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

분쟁조정 결정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 .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안내](#) 참조) .



※ 소비자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